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17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41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대구광역시 북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0. 19.
판 결 선 고	2018. 11. 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1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,330,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17

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'원고는 원고는'을 '원고는'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용달

판사 김태현

판사 곽병수